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23년 5월 생산은 전월대비 1.3% 증가(전년동월대비 0.9% 감소)

- 전산업 생산은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광공업, 공공행정, 건설업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1.3% 증가함.
 - － 전년동월대비로는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광공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어 0.9% 감소함.
- 제조업 생산은 통신·방송장비, 화학제품 등에서 줄었으나,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 늘어 전월 대비 3.2% 증가함(전년동월대비 7.5%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늘었으나, 금융·보험, 숙박·음식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1% 감소함(전년동월대비 2.0% 증가).

◆ 2023년 5월 소비는 전월대비 0.4% 증가,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3.5%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가전제품 등 내구재(0.5%), 신발 및 가방 등 준내구재(0.6%),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2%)에서 모두 늘어 전월대비 0.4% 증가함(전년동월대비 0.6% 감소).
- 설비투자는 일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2.6%) 및 항공기 등 운송장비(6.2%)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대비 3.5% 증가함(전년동월대비 4.3% 감소).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0.5% 증가,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60.3% 증가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20	2021	2022	2021				2022				2022	2023	
					1/4	2/4	3/4	4/4	1/4	2/4	3/4	4/4	5월	4월p	5월p
생산	전산업	-1.2	5.3	4.6	1.8	1.0	0.6	2.6	1.6	0.8	0.4	-1.5	0.2	-1.3(-1.0)	1.3(-0.9)
	광공업	-0.3	8.2	1.4	3.3	-1.3	1.7	2.9	3.2	-2.3	-2.4	-6.4	-0.8	-0.6(-9.0)	3.2(-7.3)
	제조업	-0.2	8.4	1.4	3.4	-1.5	1.6	3.1	3.2	-2.2	-2.6	-6.7	-0.9	-0.6(-9.2)	3.2(-7.5)
	건설업	-2.1	-6.7	2.7	-2.9	-3.3	-0.6	2.4	0.5	-0.1	0.8	4.6	5.6	1.2(12.3)	0.5(5.4)
	서비스업	-2.0	5.0	6.7	1.2	2.2	0.3	2.6	0.8	2.9	1.7	0.1	0.4	-0.5(2.9)	-0.1(2.0)
소비	소비재 판매	-0.1	5.8	-0.3	2.9	1.5	1.1	0.5	-0.7	-1.0	0.3	-0.9	-0.4	-2.6(-1.4)	0.4(-0.6)
투자	설비투자	5.9	9.6	3.3	6.3	1.4	-1.7	-0.4	0.4	-0.4	8.6	-0.2	10.4	0.9(4.4)	3.5(-4.3)
물가		0.5	2.5	5.1	1.3	0.5	0.7	1.0	1.5	2.1	1.1	0.4	0.6	0.3(3.3)	0.0(2.7)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 3) 2022년 이후 전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2년 6월, 2023년 5월, 2023년 6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 7)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2023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변동 없음(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변동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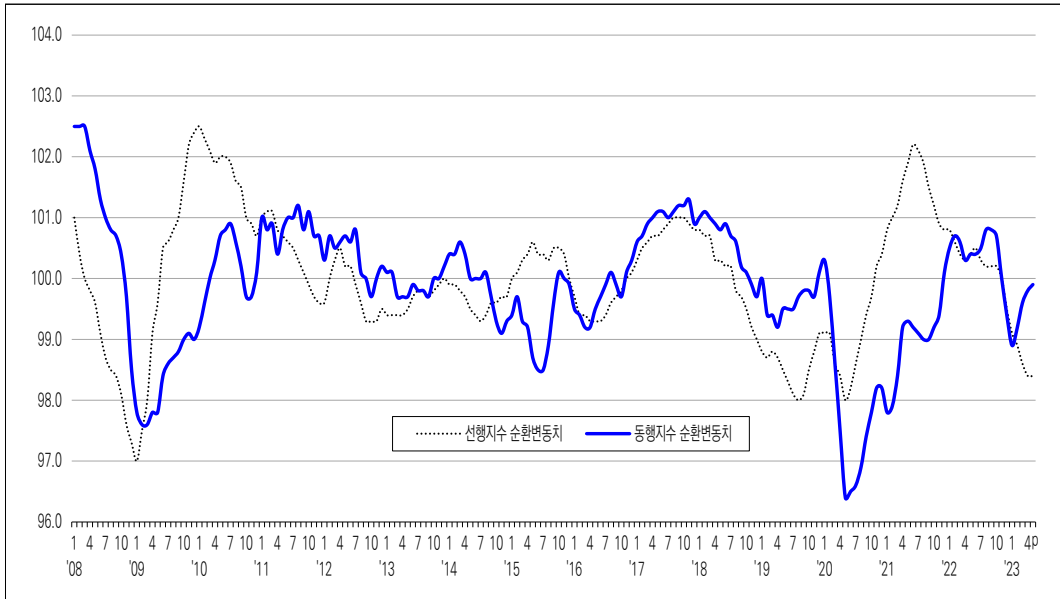
○ 2023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2(2020=100)로 전월대비 변동 없음(전년동월대비 2.7%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주택·수도·전기·연료(0.5%), 식품·비주류음료(0.2%), 보건(0.4%), 음식·숙박(0.2%), 기타 상품·서비스(0.1%), 주류·담배(0.1%)는 상승, 통신, 교육은 변동 없으며, 의류·신발(-0.1%), 오락·문화(-0.1%), 가정용품·가사서비스(-0.1%), 교통(-1.6%)은 하락함.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0.2% 상승,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0.1% 하락하여 전월대비 변동 없음.

◆ 2023년 5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3% 증가,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3% 증가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상승함.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보합.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 1) p는 잠정치임.
 2)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동행지수는 2020년=1000이 기준.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이기쁨,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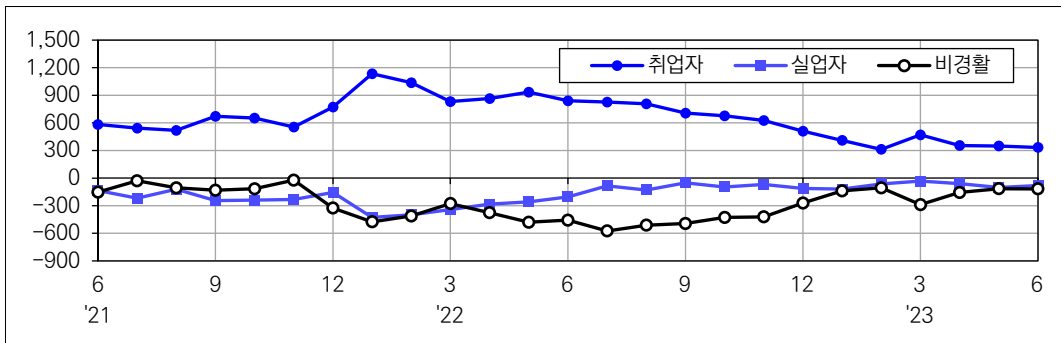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 전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

○ 2023년 6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3만 3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전월대비¹⁾ 4만 9천 명 감소).

- (산업별) 전년동월대비 6월 제조업은 취업자 수 감소폭이 축소됨. 건설업은 취업자 수 감소폭이 유지됨. 서비스업 취업자는 음식숙박 및 보건복지에서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교육 서비스 및 예술여가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됨.
- (연령별) 전년동월대비 6월은 20대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50대는 증가폭이 확대되고 60세 이상은 증가폭이 축소됨. 20대는 주로 음식숙박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50대는 금융보험 및 협회단체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교육서비스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 (종사상 지위별) 전년동월대비 6월은 상용직 증가폭이 축소되고 자영업자에서 증가폭이 변화함. 상용직은 제조업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음식숙박에서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건설업 및 음식숙박에서 증가로 전환됨.
- (일시휴직자) 6월 일시휴직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 9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5월 -6천 명)됨. 전월대비로는 7천 명 증가함.
- (실업자) 6월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8만 1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5월 -10만 2천 명)됨. 전월대비로는 2만 9천 명 증가함.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황 증감 현황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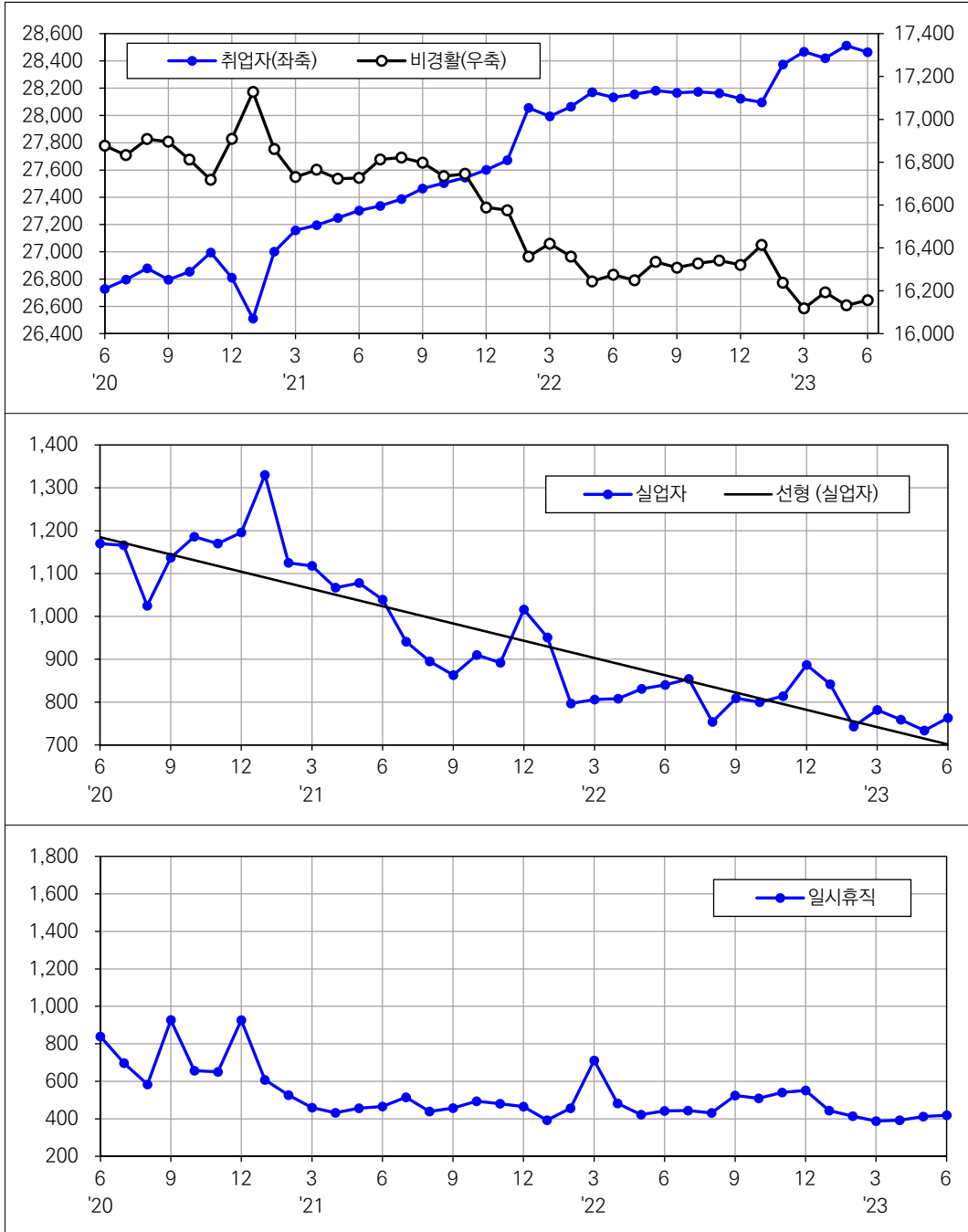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2]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일시휴직자 변화

(단위 : 천 명)



주 : 일시휴직자는 X-12 ARIMA를 이용하여 계절조정계열을 산출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3년 6월 전년동월대비 20대는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고 실업자 및 비경활은 감소폭이 축소됨. 50대는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60세 이상은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됨.
 - 전년동월대비 20대는 주로 음식숙박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50대는 건설업에서 감소로 전환됐지만 금융보험, 협회단체, 예술여가, 정보통신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교육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60세 이상은 운수창고, 도소매, 보건복지, 제조업 등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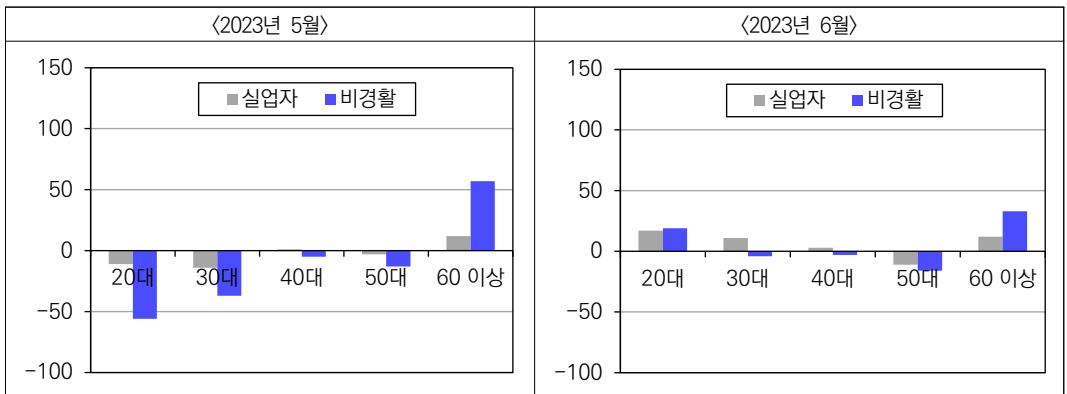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4월	5월	6월	(전월비)	4월	5월	6월	(전월비)	4월	5월	6월	(전월비)
취업자	-21	-36	-14	(5)	-116	-63	-103	(-56)	15	70	70	(-12)
실업자	-9	-6	3	(6)	-47	-67	-37	(17)	-1	-32	-17	(11)
비경활	42	59	34	(-11)	-31	-66	-55	(19)	-102	-119	-128	(-4)
실업률	-4.1	-1.9	2.1	(3.1)	-0.9	-1.4	-0.7	(0.5)	0.0	-0.6	-0.4	(0.2)
고용률	-0.9	-1.7	-0.7	(0.2)	0.0	0.9	0.3	(-0.7)	1.2	2.0	1.9	(-0.1)
	40대				50대				60세 이상			
	4월	5월	6월	(전월비)	4월	5월	6월	(전월비)	4월	5월	6월	(전월비)
취업자	-22	-48	-34	(-10)	55	49	71	(26)	442	379	343	(-4)
실업자	-7	-7	-16	(3)	11	9	-23	(-11)	-7	2	9	(12)
비경활	-82	-60	-70	(-3)	-65	-62	-57	(-16)	82	132	157	(33)
실업률	-0.1	-0.1	-0.2	(0.1)	0.1	0.1	-0.3	(-0.2)	-0.2	-0.1	0.0	(0.2)
고용률	0.8	0.5	0.8	(0.0)	0.7	0.6	0.9	(0.3)	1.5	1.0	0.8	(-0.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계절조정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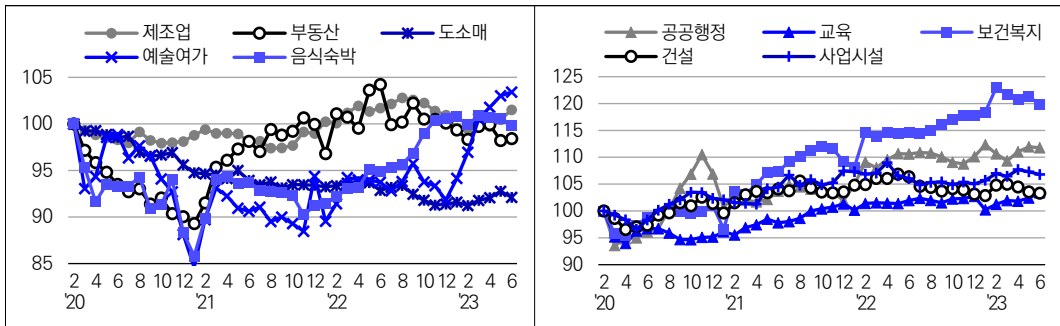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월대비) 산업별로는 도소매, 음식숙박, 보건복지, 사업시설이 감소함. 반면 부동산, 공공행정, 건설은 정체됨. 제조업, 예술여가, 교육은 증가함.
- 도소매, 음식숙박 및 부동산은 2020년 2월 수준 이하를 기록함.

[그림 4]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계절조정계열, 2020년 2월을 100으로 정규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증감	증감률
농림어업	12	-15	-14	-24	-8	-7	-38	-2.5
광업	-6	-2	0	-1	2	1	2	27.4
제조업	-97	-39	-10	-16	32	47	64	1.4
전기·가스·증기	7	5	8	-5	0	2	-3	-3.5
수도·원료재생	-6	-4	-5	-4	1	-12	-15	-9.9
건설업	-31	-66	-62	-10	-18	-5	-34	-1.6
도매 및 소매업	-62	-31	-27	10	25	-24	12	0.4
운수 및 창고업	-13	-25	-39	13	20	-2	31	1.9
숙박 및 음식점업	171	128	116	-6	-1	-18	-25	-1.1
정보통신업	30	61	53	-12	35	-2	21	2.1
금융 및 보험업	17	11	18	-27	3	-3	-27	-3.3
부동산업	2	-30	-32	1	-9	1	-7	-1.3
전문·과학·기술	100	111	98	29	30	-15	44	3.3
사업시설관리지원	-17	10	10	17	-5	-7	5	0.3
공공행정·사회보장	18	15	14	19	10	-2	27	2.2
교육서비스업	7	20	29	-2	11	18	27	1.4
보건 및 사회복지	148	166	126	-23	13	-37	-47	-1.6
예술·스포츠·여가	40	47	50	6	6	2	15	2.8
협회·단체·수리·기타	24	-15	1	-5	-18	3	-20	-1.8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6	4	-4	-4	1	-4	-6	-7.4
국제 및 외국기관	4	1	3	-1	-1	1	-1	-6.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로 2023년 6월은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증가폭이 축소됨.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폭이 확대됨.

- 상용직은 제조업에서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건설업, 공공행정 및 보건복지 등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일용직은 사업관리지원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협회단체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음식숙박에서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건설업 및 음식숙박에서 증가로 전환하고 도소매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증감	증감률
상용직	464	591	546	58	168	-29	197	1.2
임시직	-100	-158	-133	-80	-6	-29	-115	-2.5
일용직	-76	-133	-115	-69	-45	-5	-120	-10.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5	53	15	-8	9	-8	-7	-0.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6	41	81	52	15	39	106	2.5
무급가족종사자	-45	-44	-60	-1	4	-13	-11	-1.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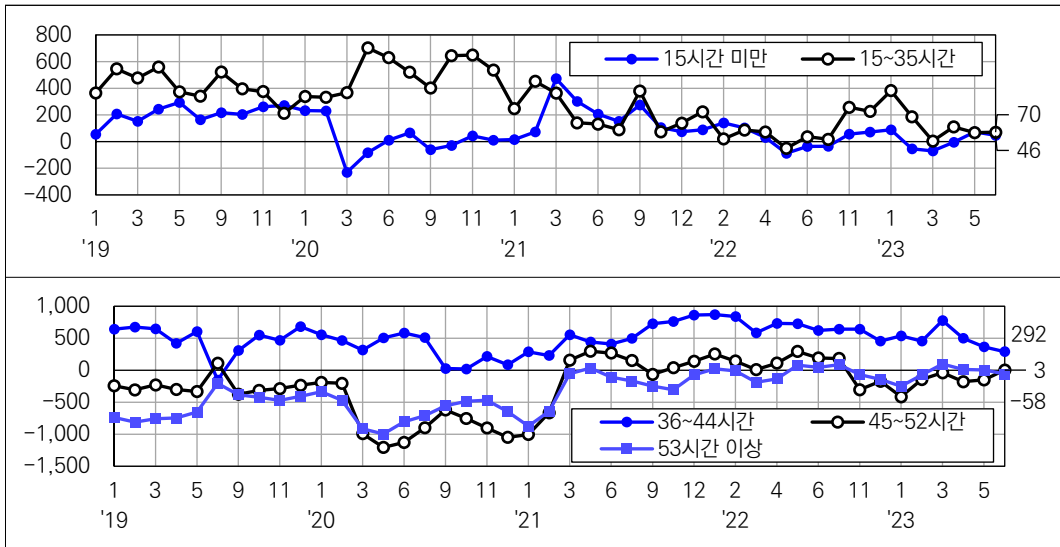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농림어업	-5	-12	0	-9	-22	-24	-4	-9	-6	-19	-20	-13	51	54	43
제조업	-37	5	38	-34	-21	-19	-28	-32	-25	10	14	5	0	-1	-1
건설업	32	20	11	-21	-20	-24	-40	-56	-68	-1	-3	2	5	-5	21
도소매	8	54	52	-21	-24	-17	-1	5	-8	-23	-25	-31	-15	-23	-9
운수창고	-1	2	-5	-25	-30	-33	2	-10	-11	8	5	5	6	8	5
음식숙박	95	77	81	54	30	35	-2	-6	-12	47	44	19	-16	-15	2
정보통신	20	45	40	0	1	5	2	3	-3	6	9	7	2	3	4
금융보험	11	10	10	-6	-14	-3	-1	2	-1	3	2	1	10	8	8
부동산	-5	-15	-6	10	-8	-15	0	0	1	3	3	1	-6	-11	-12
전문과학기술	66	85	74	15	14	9	1	2	4	20	14	15	-2	-5	-5
사업관리지원	-25	-10	-19	-7	3	5	3	3	19	8	8	4	9	10	7
공공행정	35	32	15	-17	-14	-2	-1	-2	1	-	-	-	-	-	-
교육서비스	18	43	38	-13	-21	-11	1	0	4	-7	-5	-6	16	12	8
보건복지	194	219	163	-42	-42	-37	-5	-6	-3	0	-7	-2	3	2	4
예술스포츠	15	14	20	33	28	23	4	2	1	3	8	8	-12	-7	-2
협회단체	38	17	17	-16	-14	-12	-6	-29	-8	-3	3	1	5	8	3
가구 내 고용	1	-1	-1	3	0	-6	-1	1	-1	-	-	-	2	4	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3년 6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39.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1시간 감소함.
 - 이는 36~44시간 근로자 비중은 증가하고 45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이 감소한 영향임.

[그림 5] 근로시간 집단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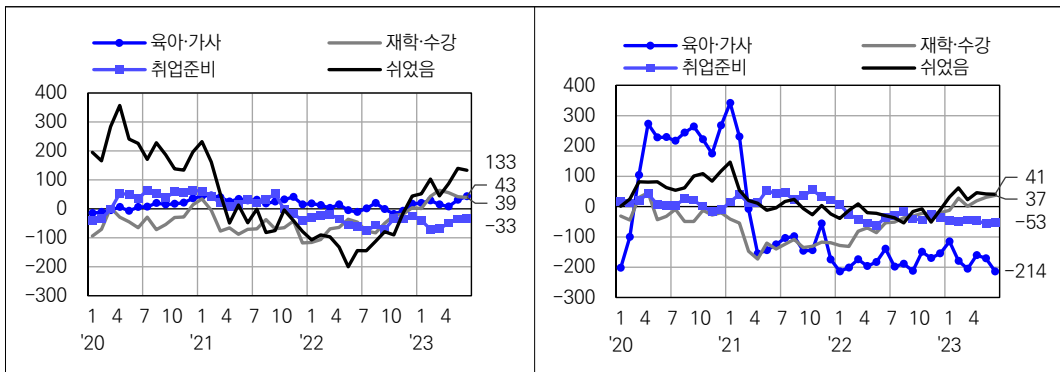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6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1만 8천 명으로 감소폭이 유지(5월 -11만 5천)됨.
 - 남성은 전년동월대비 +12만 2천 명으로 육아·가사에서 증가폭이 소폭 확대됨. 여성은 -23만 9천 명으로 육아·가사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그림 6] 성별(남자 : 좌, 여자 : 우)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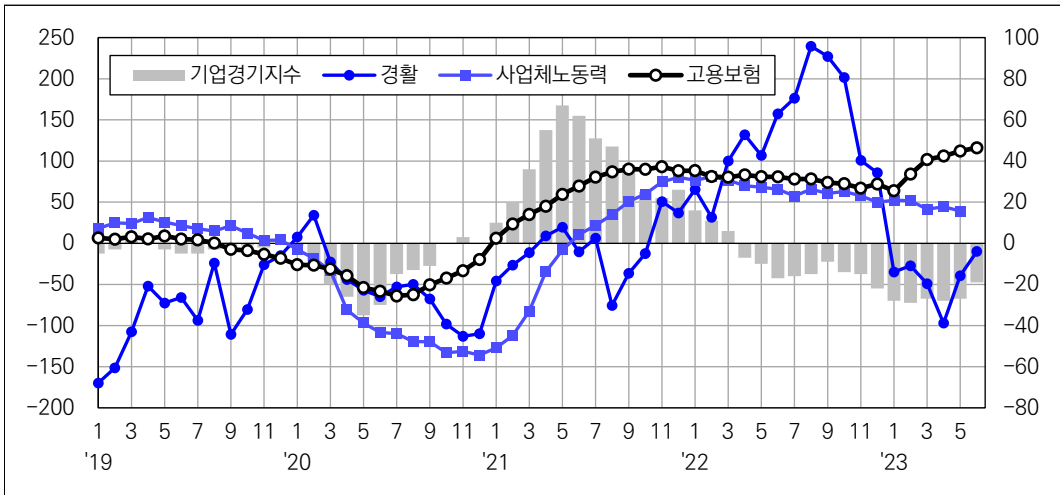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 축소,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

○ 2023년 6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는 1만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됨.

-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당연적용이 반영된 영향임.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증가폭이 축소됨. 기업경기지수는 감소세가 축소됨.
- 경찰 계절조정계열 취업자는 전월대비 4만 7천 명 증가함.

[그림 7]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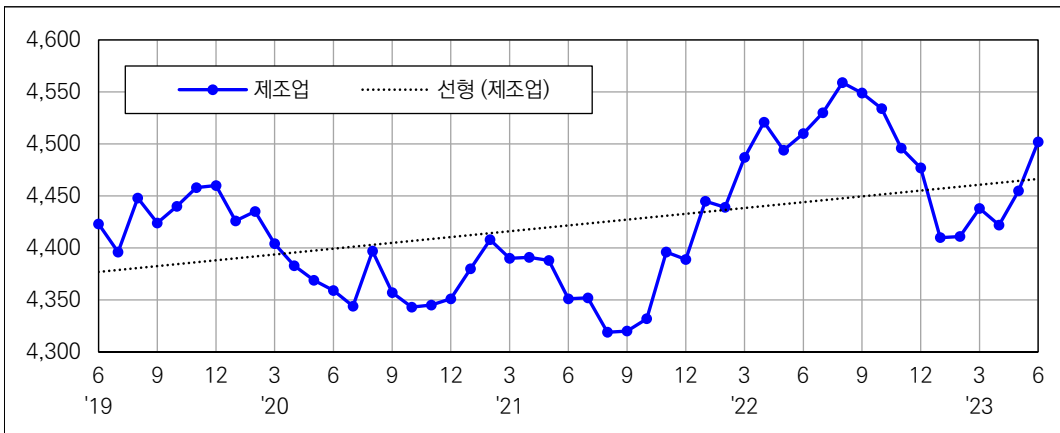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8]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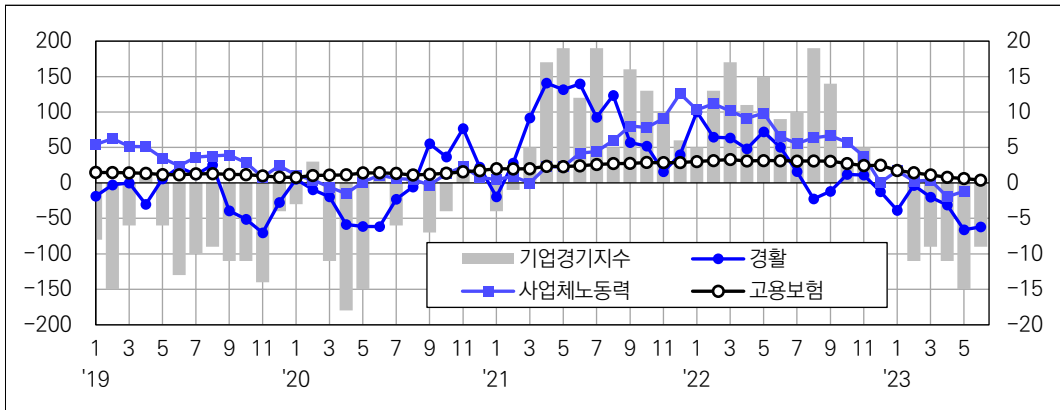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3년 6월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6만 2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을 유지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폭은 축소되고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감소폭이 축소됨.

[그림 9]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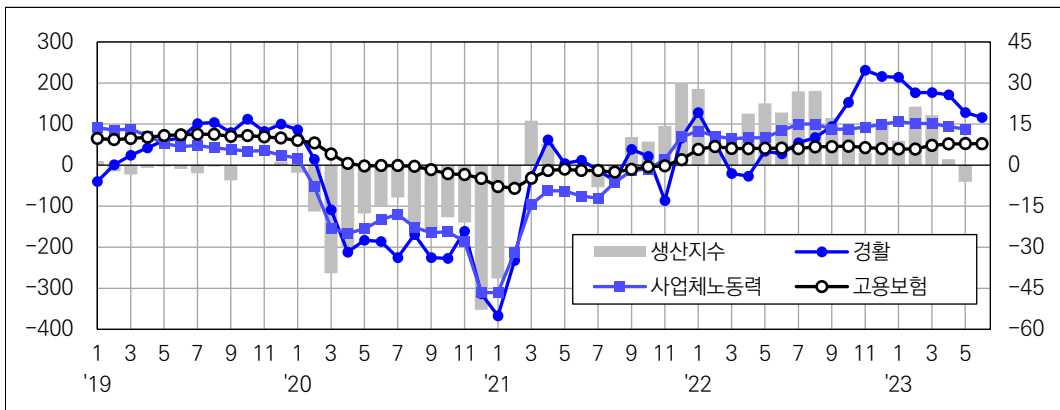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3년 6월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41만 1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
 - (음식숙박) 경찰 취업자 및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증가폭이 축소되는 추세가 이어짐.
 - (교육서비스) 경찰 취업자는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그 외 고용지표는 감소폭이 확대됨.
 - (보건복지) 경찰 취업자는 증가폭이 축소됨.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는 정체됨.
 - (예술여가) 경찰 취업자는 증가폭이 확대됨. 기업경기지수는 감소폭이 확대됨.

[그림 10]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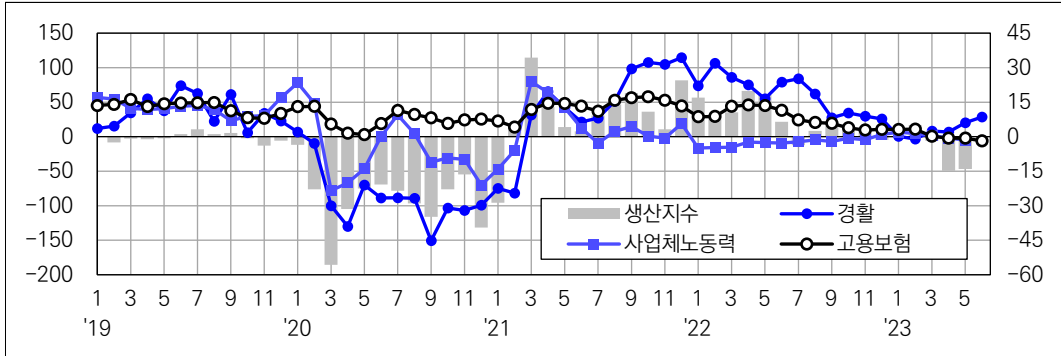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1] 교육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학원)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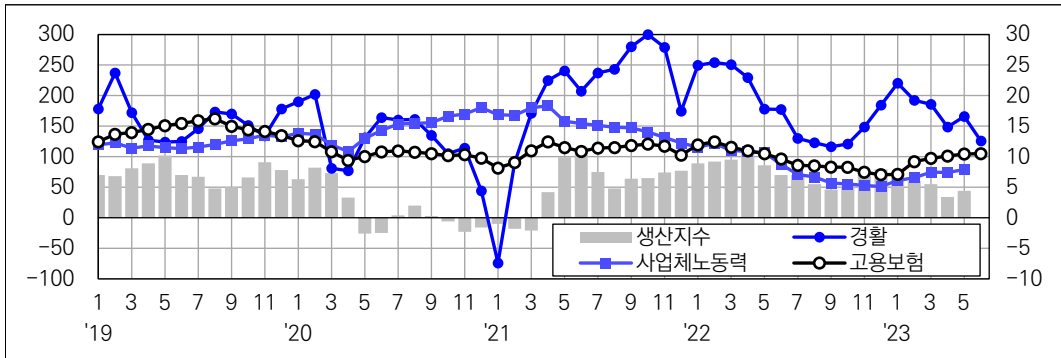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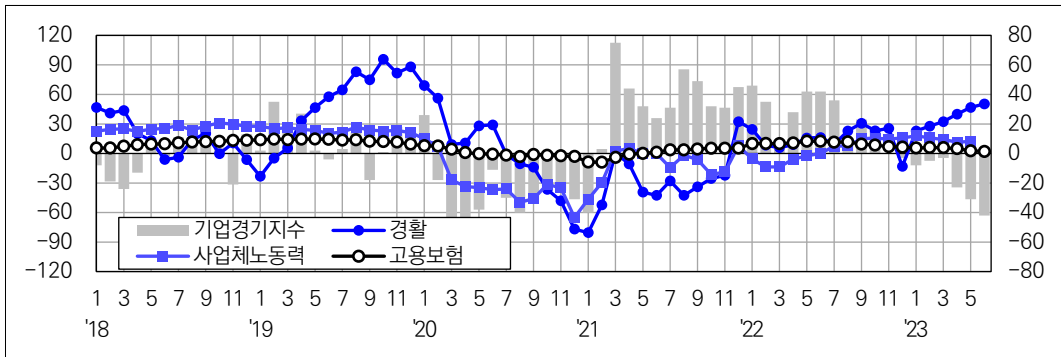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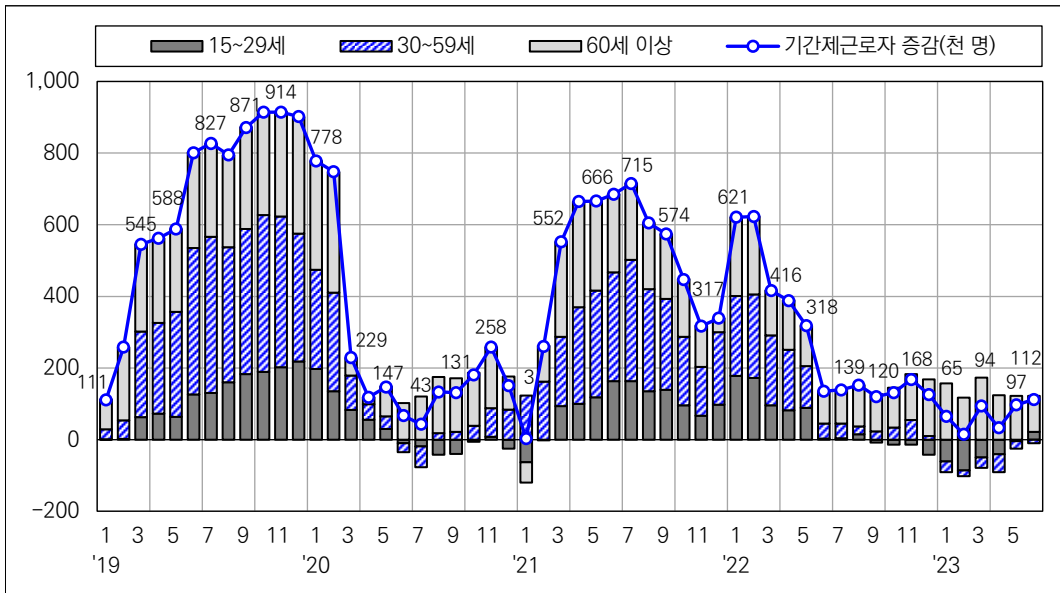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3년 6월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1만 2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됨. 기간제는 연령별로 15~29세에서 증가로 전환되고 30~59세에서는 감소폭이 축소된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2019년의 기간제 증가는 2019년 3월 'ILO 신종사상 지위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병행조사'가 시작된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임.

[그림 14] 연령대별 기간제 근로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상훈,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23년 4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5% 증가

- 2023년 4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70만 6천 원(3.5%)임.
 - 2023년 4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92만 6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1% 증가, 임시일용 근로자 임금총액은 170만 3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4% 감소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폭 확대는 전년도 상승폭 둔화에 따른 기저 영향이 큼.
 -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감소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고 근로시간이 짧은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임시일용근로자가 증가한 데 기인함.
-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3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2020=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함.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100.0)

	2019	2020	2021	2022	2022		2023		
					1~4월	4월	1~4월	4월	
전체 근로자	3,490	3,527	3,689	3,869	3,957	3,580	4,048	3,706	
임금총액	(3.4)	(1.1)	(4.6)	(4.9)	(6.1)	(2.7)	(2.3)	(3.5)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702	3,719	3,893	4,095	4,185	3,770	4,301	3,926
		(3.1)	(0.4)	(4.7)	(5.2)	(6.5)	(2.9)	(2.8)	(4.1)
	정액급여	3,010	3,077	3,181	3,319	3,282	3,263	3,420	3,398
		(4.1)	(2.2)	(3.4)	(4.3)	(4.0)	(3.8)	(4.2)	(4.1)
초과급여	202	200	208	220	212	214	213	219	
	(2.7)	(-0.9)	(3.7)	(5.7)	(5.7)	(5.7)	(0.3)	(2.1)	
특별급여	490	441	504	556	690	293	667	310	
	(-2.8)	(-9.9)	(14.3)	(10.4)	(20.3)	(-8.4)	(-3.4)	(5.8)	
임시일용근로자	1,517	1,636	1,700	1,747	1,728	1,764	1,724	1,703	
임금총액	(6.2)	(7.8)	(3.9)	(2.8)	(3.1)	(2.3)	(-0.2)	(-3.4)	
소비자물가지수	105.1	105.7	104.0	109.3	106.9	106.9	110.8	110.8	
	(0.4)	(0.5)	(2.5)	(5.1)	(4.0)	(4.8)	(4.5)	(3.7)	
실질임금증가율	3.0	0.5	2.0	-0.2	2.0	-2.0	-2.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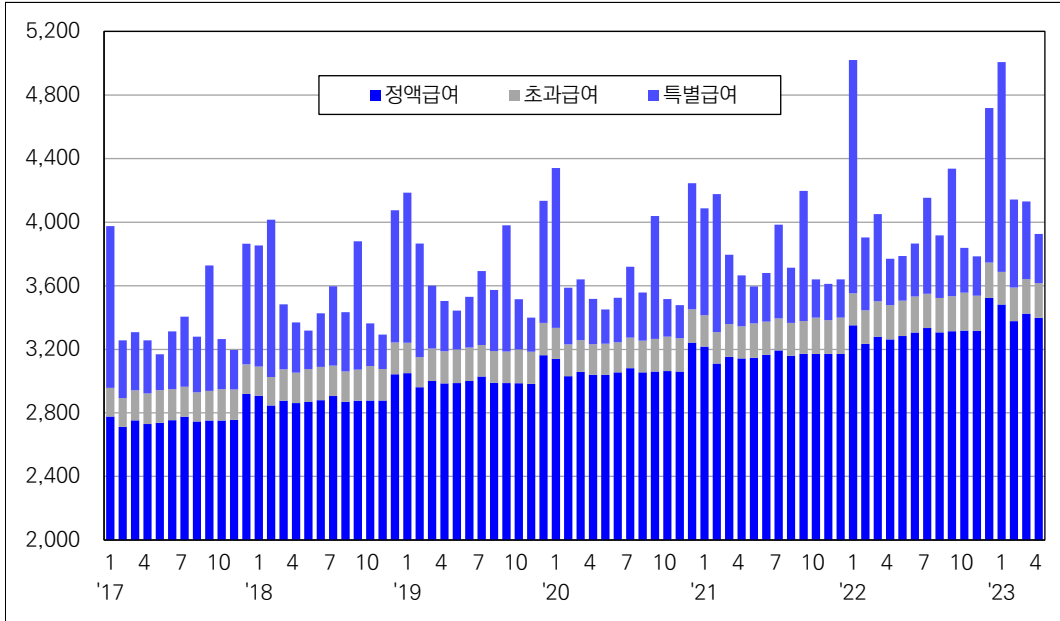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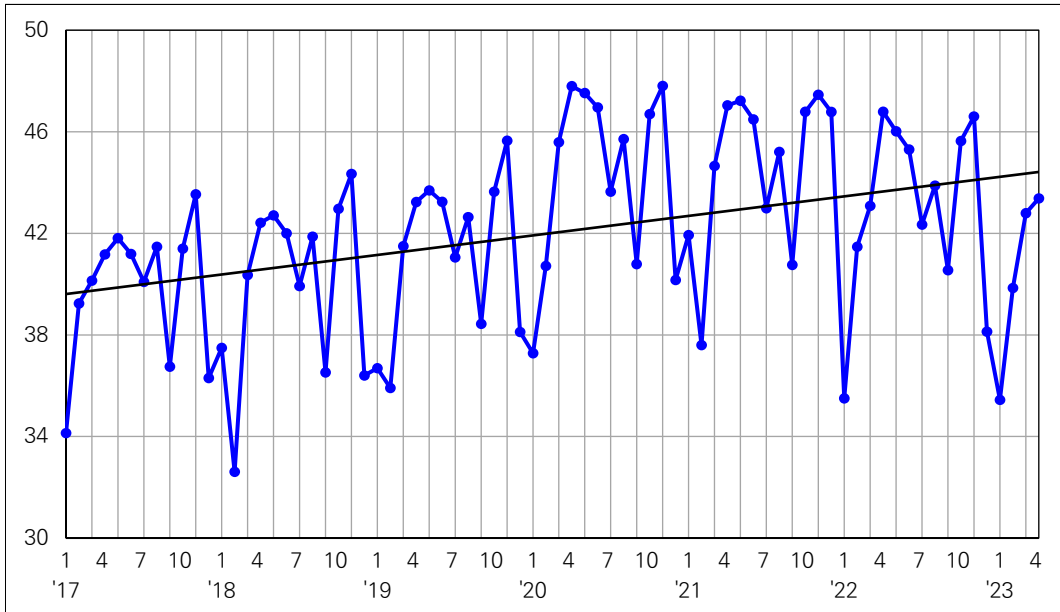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 상용근로자 임금=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4월 대규모 사업체의 월평균임금 크게 증가

○ 2023년 4월 중소기업(상용근로자 1~299인) 사업체의 임금은 339만 5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0% 증가, 대규모(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은 522만 6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2% 증가함.²⁾

-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데는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특별급여 증가 영향이 큼.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정액급여는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순으로 높고, 특별급여는 부동산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제조업의 특별급여는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임.
- 중소기업의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9% 감소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임시일용근로자는 2.4% 증가함.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천 원, %)

		2021	2022	2022		2023	
				1~4월	4월	1~4월	4월
중소 규모	소 계	3,316(3.8)	3,462(4.4)	3,461(4.6)	3,295(3.4)	3,534(2.1)	3,395(3.0)
	상용임금총액	3,510(3.9)	3,675(4.7)	3,668(4.9)	3,482(3.7)	3,764(2.6)	3,613(3.8)
	정액급여	3,012(3.4)	3,139(4.2)	3,103(3.9)	3,098(4.0)	3,227(4.0)	3,220(3.9)
	초과급여	176(2.9)	186(5.7)	180(5.8)	182(5.8)	176(-2.5)	181(-0.4)
	특별급여	322(10.4)	350(8.7)	385(12.5)	201(-2.6)	362(-6.1)	211(4.9)
	임시일용임금총액	1,671(3.4)	1,711(2.4)	1,690(2.5)	1,746(2.3)	1,685(-0.3)	1,678(-3.9)
대규모	소 계	5,582(6.5)	5,922(6.1)	6,460(10.4)	5,017(0.1)	6,574(1.8)	5,226(4.2)
	상용임금총액	5,687(6.6)	6,049(6.4)	6,598(10.8)	5,117(0.3)	6,727(2.0)	5,336(4.3)
	정액급여	3,973(3.3)	4,155(4.6)	4,120(4.2)	4,030(3.3)	4,296(4.3)	4,193(4.0)
	초과급여	357(5.1)	377(5.5)	363(5.3)	366(5.2)	383(5.5)	389(6.2)
	특별급여	1,357(18.1)	1,516(11.8)	2,116(27.7)	721(-15.2)	2,049(-3.2)	754(4.7)
	임시일용임금총액	2,214(9.1)	2,321(4.8)	2,341(6.6)	2,060(0.4)	2,326(-0.6)	2,10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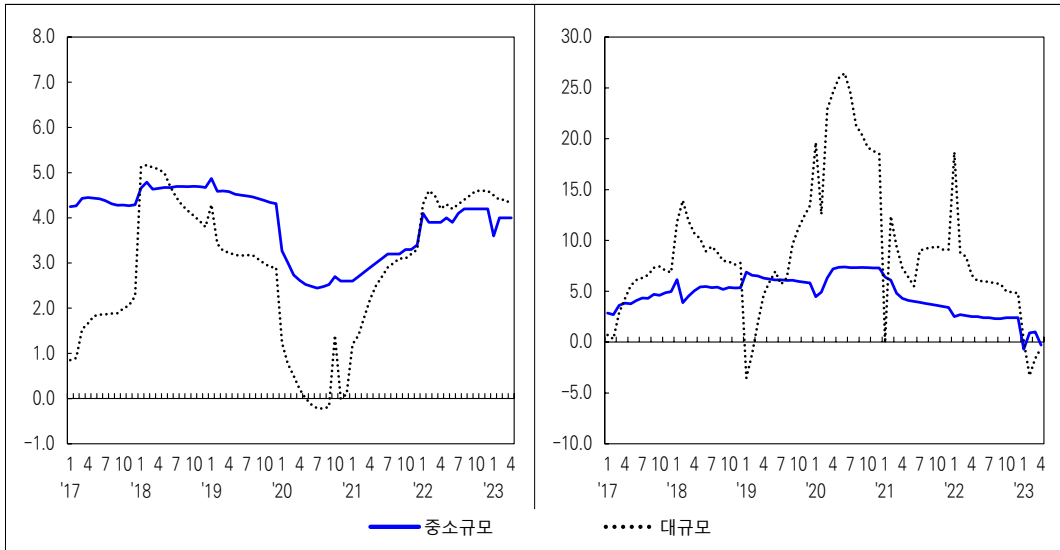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는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를 구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상용근로자가 1~299인, 대규모 사업체는 상용근로자 수 300인 이상 규모를 의미함.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주 :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4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광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23년 4월 임금이 크게 증가한 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12.2%)이고, 다음으로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7.9%), 도매 및 소매업(7.5%) 순으로 증가한 가운데 제조업(3.8%)은 평균상승률을 소폭 상회한 수준으로 나타남.
- 2023년 4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671만 7천 원)이고, 다음으로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601만 3천 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99만 3천 원)인 반면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04만 5천 원)으로 나타남.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천 원, %)

	2021	2022	2022		2023	
			1~4월	4월	1~4월	4월
전 산업	3,689 (4.6)	3,869 (4.9)	3,957 (6.1)	3,580 (2.7)	4,048 (2.3)	3,706 (3.5)
광업	4,415 (2.1)	4,608 (4.4)	4,530 (5.1)	4,325 (7.4)	4,575 (1.0)	4,168 (-3.6)
제조업	4,239 (6.2)	4,484 (5.8)	4,702 (8.7)	3,974 (1.8)	4,835 (2.8)	4,125 (3.8)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753 (0.3)	6,907 (2.3)	6,505 (2.3)	5,572 (4.4)	7,419(14.1)	6,013 (7.9)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4,094 (5.3)	4,168 (1.8)	4,039 (1.5)	3,830 (0.6)	4,134 (2.4)	3,918 (2.3)
건설업	3,106 (2.4)	3,229 (4.0)	3,214 (4.2)	3,139 (3.9)	3,341 (3.9)	3,236 (3.1)
도매 및 소매업	3,551 (3.7)	3,773 (6.3)	3,766 (5.6)	3,507 (3.8)	3,955 (5.0)	3,769 (7.5)
운수 및 창고업	3,795 (7.5)	4,040 (6.5)	3,889 (6.0)	3,666 (4.3)	4,156 (6.9)	4,112(12.2)
숙박 및 음식점업	1,905 (1.4)	2,004 (5.2)	1,965 (4.1)	1,951 (4.4)	2,082 (5.9)	2,045 (4.8)
정보통신업	4,796 (4.0)	4,999 (4.2)	5,258 (3.8)	4,756 (4.1)	5,319 (1.2)	4,773 (0.4)
금융 및 보험업	6,963 (6.7)	7,324 (5.2)	8,272 (8.0)	6,388(-4.6)	8,048(-2.7)	6,717 (5.1)
부동산업	2,954 (3.7)	3,086 (4.5)	3,171 (7.2)	3,042 (5.3)	3,146(-0.8)	3,135 (3.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106 (4.8)	5,376 (5.3)	5,374 (7.6)	4,915 (3.6)	5,470 (1.8)	4,993 (1.6)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492 (3.4)	2,584 (3.7)	2,576 (4.1)	2,496 (3.9)	2,660 (3.3)	2,604 (4.3)
교육서비스업	3,355(-0.3)	3,435 (2.4)	3,552 (1.8)	3,227(-0.3)	3,631 (2.2)	3,321 (2.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14 (2.5)	3,122 (3.6)	3,111 (4.1)	3,043 (4.1)	3,112 (0.0)	3,028(-0.5)
여가 관련 서비스업	2,994 (4.2)	3,077 (2.8)	3,079 (3.2)	2,912 (0.4)	3,103 (0.8)	2,983 (2.4)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700 (5.4)	2,832 (4.9)	2,828 (5.1)	2,694 (4.4)	3,021 (6.8)	2,842 (5.5)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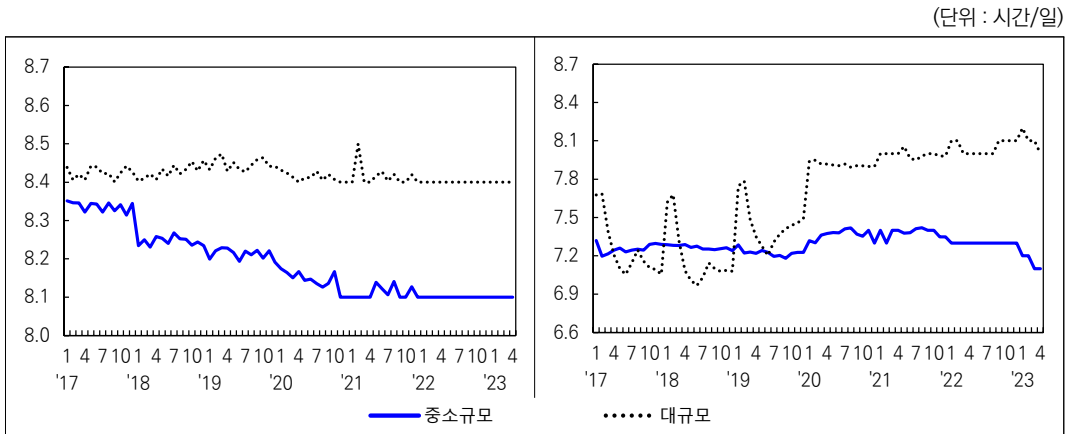
◆ 2023년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은 154.6 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7시간 감소(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대비 1일 감소)

○ 2023년 4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61.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1시간 감소,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88.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1.1시간 감소함.

-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으로, 근로일수가 전년동월대비 1일 감소한 영향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함.
-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는 건설업 근로시간 감소와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임시일용근로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임.

- 2023년 4월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을 보면, 중소기업은 153.6시간으로 전년 동월대비 8.4시간 감소, 대규모 기업체는 159.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8시간 감소함.
- 중소기업에서 근로시간이 더 크게 감소한 것은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근로시간 감소 영향 등으로 보임.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주 :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시간, %)

		2021	2022	2022		2023	
				1~4월	4월	1~4월	4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0.3(0.1)	158.3(-1.2)	155.0(-2.5)	162.0(-3.9)	156.0(0.6)	153.6(-5.2)
	상용 총근로시간	167.8(0.1)	165.9(-1.1)	161.9(-2.5)	169.7(-3.9)	164.4(1.5)	162.2(-4.4)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0.1(0.2)	158.2(-1.2)	154.3(-2.6)	162.1(-4.0)	157.5(2.1)	155.0(-4.4)
	상용 초과근로시간	7.7(-1.3)	7.7(0.0)	7.6(0.0)	7.6(0.0)	6.9(-9.2)	7.1(-6.6)
	임시일용 근로시간	97.4(1.4)	96.4(-1.0)	95.4(-0.4)	97.8(-1.1)	88.5(-7.2)	86.5(-11.6)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2.3(-0.3)	160.4(-1.2)	156.6(-3.6)	164.0(-4.7)	160.9(2.7)	159.2(-2.9)
	상용 총근로시간	163.4(-0.3)	161.7(-1.0)	157.7(-3.5)	165.4(-4.5)	162.5(3.0)	160.8(-2.8)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2.3(-0.5)	150.6(-1.1)	146.8(-3.8)	154.6(-4.9)	151.8(3.4)	150.1(-2.9)
	상용 초과근로시간	11.1(1.8)	11.0(-0.9)	10.9(0.0)	10.8(0.9)	10.7(-1.8)	10.7(-0.9)
	임시일용 근로시간	127.9(2.2)	125.0(-2.3)	122.8(-4.7)	123.2(-5.4)	117.8(-4.1)	115.3(-6.4)

주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대규모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적게 감소한 것은 전년동월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근로시간 감소가 더 컸던 기저 영향으로 보임.

◆ 2023년 4월 월평균 근로시간은 근로일수 감소 영향으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 대비 감소

○ 2023년 4월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7.6%)과 건설업(7.5%)임.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임시일용 근로자(월평균 근로시간 69.2시간)가 전년동월대비 18.6% 증가한 영향으로 보임.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21	2022	2022		2023	
			1~4월	4월	1~4월	4월
전 산업	160.7(0.1)	158.7(-1.2)	155.2(-2.7)	162.3(-4.0)	156.8(1.0)	154.6(-4.7)
광업	179.9(-0.7)	174.8(-2.8)	171.4(-4.8)	180.0(-5.9)	169.5(-1.1)	166.2(-7.7)
제조업	173.5(0.5)	171.1(-1.4)	167.7(-3.1)	175.8(-4.4)	171.2(2.1)	169.7(-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1.6(-1.3)	158.6(-1.9)	156.8(-3.2)	170.7(-3.1)	160.8(2.6)	165.2(-3.2)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6.9(0.2)	174.4(-1.4)	171.7(-2.3)	178.7(-3.0)	170.0(-1.0)	167.1(-6.5)
건설업	135.9(-0.7)	134.3(-1.2)	131.8(-2.2)	137.4(-2.7)	129.7(-1.6)	127.1(-7.5)
도매 및 소매업	163.8(0.0)	162.3(-0.9)	159.0(-2.2)	166.4(-3.3)	160.3(0.8)	157.5(-5.3)
운수 및 창고업	160.2(0.8)	160.6(0.2)	156.3(-1.1)	162.5(-2.2)	160.0(2.4)	158.5(-2.5)
숙박 및 음식점업	148.4(-0.9)	146.5(-1.3)	142.5(-1.6)	148.2(-2.7)	138.5(-2.8)	136.9(-7.6)
정보통신업	164.1(0.2)	162.7(-0.9)	158.9(-2.6)	166.8(-4.3)	162.5(2.3)	159.2(-4.6)
금융 및 보험업	161.9(-0.1)	159.8(-1.3)	155.6(-4.1)	163.9(-5.4)	161.2(3.6)	157.5(-3.9)
부동산업	171.8(-0.8)	169.4(-1.4)	165.4(-3.0)	171.7(-3.7)	167.6(1.3)	165.5(-3.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1.6(-0.1)	160.3(-0.8)	156.6(-2.9)	165.1(-4.3)	159.8(2.0)	157.5(-4.6)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62.1(0.2)	159.8(-1.4)	156.5(-2.6)	162.0(-4.3)	158.3(1.2)	155.4(-4.1)
교육서비스업	137.2(0.4)	136.1(-0.8)	132.2(-2.5)	138.9(-4.7)	136.3(3.1)	135.0(-2.8)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8.3(-0.2)	155.3(-1.9)	151.7(-3.0)	158.6(-4.5)	150.9(-0.5)	148.2(-6.6)
여가 관련 서비스업	152.7(2.0)	150.8(-1.2)	147.2(-0.7)	154.4(-5.4)	149.0(1.2)	147.4(-4.5)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2.4(1.3)	160.3(-1.3)	157.2(-2.1)	163.9(-3.7)	160.8(2.3)	158.5(-3.3)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4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제조업(169.7시간)이고, 다음으로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167.1시간), 광업(166.2시간), 부동산업(165.5시간) 순임. 반면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27.1시간)으로 나타남.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3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33건
 - － 6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11건)보다 22건 많은 수치임.
- 2023년 6월 조정성립률 26.7%
 - － 6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33.3%보다 6.7%p 낮은 수치임.

〈표 1〉 2022년, 2023년 6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3. 6	33	19	4	2	2	11	1	10	4	0	23	26.7%
2022. 6	11	12	3	0	3	6	1	5	3	0	7	33.3%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중재사건

- 2023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중재사건 건수는 1건
 - － 6월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1건)와 같은 수치임.
 -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건수는 0건임.

〈표 2〉 2022년, 2023년 6월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진행 중
		소계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2023. 6	1	0	0	0	0	2
2022. 6	1	0	0	0	0	4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2023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207건
 - 6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220건)보다 13건 적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8.2%(51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71.8%(130건)를 차지함.

〈표 3〉 2022년, 2023년 6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3. 6	207	181	44	7	86	6	17	21	544
2022. 6	220	172	42	8	84	7	13	18	515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3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7건
 - 6월 복수노조사건¹⁾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2건)보다 5건 많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10.0%(1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90.0%(9건)를 차지함.

〈표 4〉 2022년, 2023년 6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3. 6	7	10	1	0	1	0	8	0	9
2022. 6	2	5	3	0	2	0	0	0	8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1)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 직장인 78% “내년 최저임금 1만 1,000원 이상 돼야”

- 6월 25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77.6%가 내년 최저임금이 1만 1,000원, 40.5%는 1만 2,000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했음을 밝혔다.
- 평균적인 노동자가 적절한 삶의 질(어려움 없이 식료품, 임대료, 이자, 교통비 및 기타 필수 청구서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누리기 위해 시간당 얼마를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직장인 84.5%는 1만 1,000원 이상, 직장인 65%는 1만 2,000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 물가인상으로 사실상 임금이 줄었는지를 묻자 85.6%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 직장인 4명 중 3명(75.5%)은 법정 최저임금을 특수고용직, 플랫폼, 프리랜서 등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데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 직장인 65%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는 업종을 따로 정하는 ‘하향식 업종별 차등 적용’에 반대했고, 특히 여성(72.0%)이 남성(59.6%)보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직장인 74%,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 찬성

- 6월 29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 73.5%가 노조법 2조 개정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누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원청이 결정한다’는 응답이 42.6%, ‘원·하청 모두에 결정권이 있다’는 응답이 42.0%였음. ‘하청회사가 단독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응답이 45.9%로 가장 높았음. 재벌·대기업(27.5%), 국회·정치권(16.3%), 노동조합(6.7%) 등이 뒤를 이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는 응답이 43.3%로, ‘행사해야 한다’(23%)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음.

◆ 삼성중공업 현장직 노조 설립

- 7월 5일, 삼성중공업 현장직 노조는 7월 4일 거제시에서 노조 설립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 그간 삼성중공업에는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자협의회만 있었고 노동자협의회는 노동3권

- 보장을 충분하게 대변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음.
- 그 밖에 이 회사에는 삼성중공업 사무직 노조와 해고자 등이 주축이 된 삼성중공업 일반 노조가 결성돼 있음.
- 이번 노조 설립은 수십 년간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권익 보호에 나서는 차원에서 이뤄졌음.
- 삼성중공업 노조는 아직 상급단체 가입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임. 노조는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가입 신청을 받고 나서 늦어도 다음 달 중 사측에 단체교섭요구서를 전달할 계획임.

◆ 건설노조 “수사받는 조합원 31% ‘극단적 선택’ 생각”

- 6월 13일 건설노조와 심리치유 단체 ‘두리공감’은 ‘노조탄압과 국가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위기 긴급점검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담회’를 열었음.
- 6월 11일 기준, 경찰·검찰·법원에 출석한 경험이 있는 조합원 1,02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했고 설문에 응한 295명 중 30.8%(91명)는 최근 2주간 차라리 죽거나 자해할 생각을 했다고 응답했음.
- 구체적으로 ‘2주 중 2~6일’은 57명, ‘2주 중 7~12일’은 18명, ‘거의 매일’은 16명이었음.
- 응답자의 55.3%는 사회심리스트레스 고위험군에 속했고, 응답자의 45.1%가 검사나 진료가 필요한 우울 증상을 보였으며, 66.4%는 불안을 호소했음,
- 사회심리스트레스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크고 작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상태인지, 전반적 행복감을 느끼며 생활하는지를 점검하는 지표임.

◆ 서울 제조업 노동자 60% 휴식권 보장 안 돼

- 6월 23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서울지역 산업단지 및 제조업 부문 노동자 1,559명을 대상으로 한 ‘체감경기·임금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에서 노동자들은 △연·월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거나 수당을 받지 못한다(60.2%) △공휴일 근무하거나 무급 휴식한다(27.1%) △무급으로 조기출근·잔업 등을 한다(35.3%) △사업장에 휴게실이 없다(64.3%) 등의 응답률을 보였음.
- 노조는 응답자 대부분이 △물가가 전년보다 상승했다(96.6%) △최저임금만으로는 가족생계비 충당이 어렵다(83.6%)고 답한 만큼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여기는 사업장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울산 동구, 80억 원 노동복지기금 조성해 노동자 지원

- 6월 13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는 '울산광역시 동구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심의·가결했음,
- 해당 조례에 따르면, 울산 동구·기업, 그 밖의 법인·단체의 출연금으로 노동복지기금을 마련해 노동자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용자·지원, 노동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긴급한 복지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은 실직, 폐업, 산업재해, 질병, 임금체불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뜻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지원대상이 됨.
- 구 출연금은 해당 연도 일반회계 본예산에서 1,0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올해 동구 출연금은 약 16억 원이 될 전망이다. 동구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80억 원 이상의 금액이 조성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
- 기금의 존속 기한은 시행일부터 5년이며, 기금 집행은 2024년 1월 1일부터 가능함.

◆ 7월부터 15세 미만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 6월 20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음,
- 15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도 본인이 원하면 7월 4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의 길이 열림. 가입은 사업주 또는 종사자가 하되, 탈퇴는 종사자가 신청함,
- 다른 일반 근로자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가입 신청 및 탈퇴기한 등은 제한이 없음.
- 이외에도 7월 1일부터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는 하나의 주된 사업장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짐.
- 과거 산재보험 가입의 주요 요건이었던 '전속성' 요건이 지난해 5월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폐지된 덕분임.
- 이번 시행령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노무제공자에 신규 직종(방과후 강사, 관광통역 안내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을 추가하고, 택배기사와 방문판매원 등 기존 직종 내 범위를 넓혔음.

◆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5명 중 1명 '해고 경험'

- 6월 18일 직장갑질119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서 접수된 제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해고와 임금 문제가 147건(68%)으로 가장 많았음.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4대 보험 미가입 같은 법 위반이 각각 100건(46.2%), 44건(20.3%)으로 뒤를 이었음.
- 또한 2023년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5명 중 1명(21.1%)은 '2022년 1월 이후 본인 의지와 무관한 실직 경험'이 "있다"고 답했음.
-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7.2%가 "있다"고 답해 5명 미만 사업장 응답률의 3분의 1에 불과했음. 5~30명 사업장의 경우 16.3%, 30~300명 사업장의 경우 12.2%가 "있다"고 답했음.
- 5명 미만 노동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미작성에 대해 응답자의 37.9%는 '그렇다'고 답했음. 2명 중 1명(55.3%)은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4대 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자도 절반(50%)에 그쳤음.

◆ 공공기관 3곳 중 1곳 감정노동 보호조치 미흡

- 6월 19일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2019년 공공기관 339곳(응답 181곳), 2022년 343곳(응답 186곳)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공기관 3곳 중 1곳은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 조사 결과 감정노동자 보호·도움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2019년 39.3%, 2022년 37.7%에 그쳤음.
- 전담부서·전담자를 지정한 곳도 2019년 29.9%, 2022년 45.6%뿐이었음.
- 매뉴얼을 둔 곳도 두 해 모두 45.6%로 절반이 되지 않았음. 감정노동 관련 건강 프로그램을 둔 기관도 2019년 35.8%, 2022년 42.4%에 불과했음. 건강 관련 교육조차 2019년 44.4%, 2022년 44.2%만 시행하고 있었음.
- 고객에게 감정노동자 보호 정보를 고지하는 곳도 드물었음. 감정노동 관련 홍보물을 게시한 공공기관은 2019년 32.8%, 2022년 36.8%뿐이었음. 통화 연결 중 음성고지를 하는 곳은 2019년 33.7%, 2022년 43.0%였음.
- 위협 상황 시 고객 등 가해자와 노동자를 분리하는 절차를 둔 곳은 2019년 37.0%, 2022년 40.9%로 절반도 되지 않았음.
- 위협을 겪은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주는 곳은 2019년 40.5%, 2022년 43.0%에 그쳤음. 치료 상담(2019년 38.5%, 2022년 40.4%), 법률 지원(2019년 34.6%, 2022년 39.5%), 작업중지권(2019년 36.7%, 2022년 40.9%) 등을 둔 곳도 절반 이하였음.
- 고객응대 직원 실태파악을 진행 중이라는 응답도 2019년 24.0%, 2022년 28.7%로 낮았음.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곳도 2019년 36.7%, 2022년 37.7%에 그쳤음.

◆ 충북 MZ노동자 10명 중 9명 “노조 꼭 필요해”

- 6월 27일 금속노조는 노조에 가입한 충북지역 청년노동자 220명을 대상으로 MZ세대 담론과 노동조건 및 노조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9명은 청년에게 노조가 꼭 필요하다고 인식했다고 밝혔음.
- 응답자 절반 이상(59.5%)은 MZ세대 노동자가 ‘개인 능력·성과에 따른 보상’, ‘시험·경쟁을 통한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인식에 동의하지 않았음.
- 면접 중 이어폰을 끼고 있거나 정시에 맞춰 출퇴근하는 등 미디어에서 재생산되는 MZ세대 노동자에 대한 묘사도 “개인 간 편차”(49.5%)이거나 “언론이 만든 허구”(18.6%)라고 인식했음.
- 응답자 가운데 74%는 노조가 “꼭 필요하다”고 했음. 15.9%는 “필요하지만 나서서 조직하고 싶진 않다”고 답했음.
- 주변 또래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은 이유를 묻은 결과, 절반(51.3%)가량이 “해고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까 봐” 가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음. “같은 회사에 오래 다닐 생각이 없어 굳이 나서고 싶지 않아서”(26.3%)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음.
- 응답자 대부분은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인 주 40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인식했음. 적정 노동시간을 묻은 결과 “32시간 또는 40시간 미만”(43.6%), “법정 노동시간 주 40시간”(35.9%)이 높게 나타났음.

◆ 관광통역사 97%가 고용보험 ‘미가입’

- 7월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가입 추이’를 보면, 관광통역안내사 97% 정도가 고용보험에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 따르면 국내 관광통역안내사는 1만 6,000명 정도임. 이를 고려하면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약 3% 수준임(559명).
- 2022년 7월부터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5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됐음.
- 관광통역안내사와 IT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들도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됐음.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